

200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아래와 같이 결정함.

II. 관계규정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및 제17조의2
- 서울특별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III. 2000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

2000. 6. 20(화) ~ 6. 29(목) 10일간

※ 참고사항

1. 제119회 임시회 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기본계획을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통보
2.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종합하여 의결한 후 본회의에 회부
3. 제11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4 중 일비(1일당)란 및 숙박비(1야당)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일비(1일당)	숙박비(1야당)
가등급 40	가등급 186
나등급 40	나등급 135
다등급 40	다등급 107
라등급 40	라등급 91
가등급 35	가등급 151
나등급 35	나등급 109
다등급 35	다등급 84
라등급 35	라등급 7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의회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결의안

의안번호 593

제안년월일 : 2000년 4월 19일

제안자 : 운영위원장

I. 주 문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의3과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구성된 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여성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장묘문화개선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21세기준비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6월 30일까지로 각각 연장한다.

II. 제안이유

1999년 10월 21일 제1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 의결하고 1999년 10월 26일 제4차 본회의에서 위원 선임 의결한 서울특별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지원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여성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장묘문화개선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21세기준비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각각 2000년 4월 25일로 종료되나, 각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활동기간 연장 건의가 있어, 2000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각각 연장하여 특별위원회 활동을 종합결산하고 운영의 효성을 높이고자 함.